

의안 번호	553
----------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검 토 보 고 서

2026. 2. 26.
전문위원 신 정 경

1. 제안경위

- 가. 제출자: 오중균 의원 외 8인
- 나. 의안번호: 제553호
- 다. 제출일자: 2026. 1. 28.
- 라. 회부일자: 2026. 2. 11.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장기 연임으로 인한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마련(안 제6조)
- 나. 띄어쓰기, 맞춤법 등 자구 정리(안 제2조, 제4조~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 라. 입법예고: 2026. 2. 2. ~ 2026. 2. 9.(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내용 : 연임 여부 및 그 횟수를 조례에 명시

- 전국 69개 기초 자치구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점검결과 대다수 지방의회가 고문의 임기는 정해두었지만,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통제장치 미흡한 실정
- 주요 문제점: 연임 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 장기 연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부패 및 공정성 저해

나.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 (안 제6조)

현행	임기 2년으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횟수 제한 없이 재위촉 가능
개정안	고문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함.

- 이는 법제처의 위원 임기 규정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서울시 자치구 의회 중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의 임기를 일부 개정한 의회는 관악구와 종로구이며, 2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용어의 정비 및 자구 수정 (안 제2조, 제4조 ~ 제7조 등)

- 자구 수정: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 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조례 상 오용되고 있는 '자문(諮問)'용어와 불분명한 띄어쓰기 등 자구를 일괄 정비함.

<참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中 한자어 본뜻대로 바르게 쓰기

◆ **자문하다/자문을 구하다 → 자문하다(○)/ 자문을 구하다(x)**

- 바른 표현:

[질문할 때] 자문하다, 조언을 구하다, 문의하다, 묻다(○)

[질문에 대답할 때] 자문에 응하다, 자문에 답하다, 자문에 검토 의견을 내놓다(○)

- 틀린 표현: 자문을 받다/자문을 얻다/자문을 구하다/자문을 요청하다(x)

○ 시행일 설정 (부칙)

- 시행일: 2026년 4월 1일
- 현재 위촉 중인 고문의 임기 만료일(2026. 3. 31.) 이후로 시행일을 지정하여 기존 위촉에 대한 법적 신뢰를 보호하고 제도의 안정적 전환을 도모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횟수를 명확히 제한하려는 것임.
- 특히, 우리 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가장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인 한 차례 연임을 채택함으로써 청렴 의지를 강조하였음.
- 이는 특정 전문가의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와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에게 참여 기회를 개방하여 의정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별첨1 관련 조례 현황(2026. 1.)

구분	조문내용	개정일
인천 계양구의회	제5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2024. 4. 5.
서울 관악구의회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5. 4. 17.
서울 종로구의회	제5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2025. 12. 19.
경기도의회	제5조(고문의 위촉기간)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u>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2018. 7. 17.

별첨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2. 지방의회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평가대상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등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위촉) ① 의회 의장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남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인천광역시)
제4조(위촉) ① 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 한다.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①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 기간이 만료되어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종료 때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각 자치구 의회는 입법이나 법률 사안 및 의회 운영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운영

□ 문제점

- 대다수 자치구 의회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 여부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
 - 연임 여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거나, 필요한 경우 의장이 연임 또는 재위촉할 수 있으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가 우려
 - 장기 연임 시 특정인에게 의회 관련 일감 몰아주기,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부패발생 우려가 있고,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참고>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中 위원 임기와 신분규정 일부

- ◆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 “연임할 수 없다.” 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 ◆ “위원회의 운영이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연직인 위원이나 그 직위에 의하여 임명되는 공무원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되 (중략)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표 2] 시·도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임기 및 연임 규정 현황

구 분	관련 규정	고문임기	연임 또는 재위임 여부	연임 제한 유무
서울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연임	o(두차례)
서울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3조(임기) 2년	연임	x

구 분	관련 규정	고문임기	연임 또는 재위임 여부	연임 제한 유무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연임	X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연임	X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연임	X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법률자문위원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부산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재위촉	X
부산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위촉기간) 2년	재위촉	X
부산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연장	X
부산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위촉기간) 2년	재위촉	X
부산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부산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위촉기간) 2년	연장	X
부산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위촉기간) 2년	연임	X
부산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위촉기간) 2년	연임	X
부산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부산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1년	없음	

구 분	관련 규정	고문임기	연임 또는 재위임 여부	연임 제한 유무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재위촉	X
부산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부산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임기) 1년	재위촉	X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위촉기간) 2년	연장 (필요한경우연장할수있다)	X
대구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위촉) 2년	연임	X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재위촉	X
대구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재위촉	X
대구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위촉) 2년	연임	X
대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위촉기간) 2년	재위촉	X
대구 서구	대구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제4조(임기) 2년	연임	X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위촉) 2년	연임	X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연임	O(한차례)
인천 남동구	남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재위촉	X
인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위촉및해촉)2년	없음	
인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재위촉	X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재위촉	X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재위촉	X
인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재위촉	X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연임	X
광주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위촉기간) 2년	연임	X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재위촉	X
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5조(임기) 1년	재위촉	X
대전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고	제5조(임기) 2년	재위촉	X

구 분	관련 규정	고문임기	연임 또는 재위임 여부	연임 제한 유무
	문 운영 조례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대전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임기) 1년	재위촉	x
대전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임기) 2년	재위촉	x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재위촉	x
울산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연임	x
울산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재위촉	x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임기) 2년	재위촉	x

< 언론보도 사례 >

- ◆ “한번 말으면 10년”... 시·도 고문변호사 철밥통(14.2.17, 연합뉴스)
- ◆ “내 사람 챙기기?... △△시장 시절 내내 고문변호사 연임”(21.10.31. 서울경제)

□ 개선방안

- ① 부산 수영구의회 등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여부 및 그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 대구 남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등 연임규정이 있는 자치구의회는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